

특집 : 헌정사 연구와 비교 헌법(1)

美軍政法令에 관한 研究*

—朝鮮國防警備法과 朝鮮海岸警備法の 資料 發掘에 즈음하여—

최경옥**

목 차

- I. 序說
- II. 美軍政法令의 根據와 類型
- III.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 西紀 1946年 6月15日 ; 法令 第86号에 依據」의 자료 발굴(RG 407, 554에서)
- IV. 現存하는 美軍政法令集의 分析
- V. 美軍政廳 官報와 관련하여
- VI. 本 美軍政法令集의 內容과 特徵

[국문요약]

해방된 조선에 있어서 美軍政(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 USAMGIK)이란 존재는 장래의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군정이기 때문에 또한 그 군정청에서 발하는 법령들(포고(Proclamation), 法令(Ordinance), 部令(Department Orders) 및 局令(Bureau Orders), 指令(Bar Admisson), 行政命令(Executive Orders), 訓令(Instructions), 一般告示(General

* 이 논문은 “2002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2-073-BM1020).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헌정사연구회 책임연구원.

Notice), 公告(Public Notice), 規則(Regulation))의 종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법령들이 3년간에 군정시기에 (남)조선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와 관련하여 그 중요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아직도 그 법령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과 「朝鮮海岸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西紀 1946년 6월 15日附, 法令 第86号에 依據; 이하 조선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1946년)이라 칭함)의 자료가 발굴되었으므로 그 자료도 소개한다.

본 논문의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序說
- II. 美軍政法令의 根據와 類型
- III.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 西紀 1946年 6月 15日; 法令 第86号에 依據」의 자료 발굴(RG 407, 554에서)
- IV. 現存하는 美軍政法令集의 分析
- V. 美軍政廳 官報와 관련하여
- VI. 本 美軍政法令集의 內容과 特徵

[주제어] 在朝鮮美軍政廳(USAMGIK), 법령의 종류, 「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朝鮮海岸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미군정청 관보(Official Gazette)

I. 序說

먼저 오늘에 와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헌정사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우선 해방 이후 한국의 50년 헌정사를 연구하는데, 그 시초로서 미군정당시의 법령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법령집들을 찾아보는 가운데, 기존에 원본 내지 원본의 영인본, 아니면 이미 발간된 법령집들을 보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흩어져 있거나 분산되어져 있는 그러한 법령집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 해보는 것도 요망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므로 본 해제에서는, 첫째, 어떠한 근거로 조선에서 미군정이 실시되었으며, 또한 미군정청이 법령을 발하였는가, 그리고 그 유형을 분석함(II)과 아울러, 둘째,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까지도 법원에서 그 출처 미상으로

로 위헌시비가 일고 있지만, 국내에 현존하는 미군정법령집에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는 「1948年 7月 5日 公布, 8月 4日 效力發生의 國防警備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1946년 6월 15일에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USAMG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ment, Seoul, Korea; 이하 미군정청으로 칭함)에 의하여 공포된 「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과 「朝鮮海岸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西紀 1946년 6월 15日附, 法令 第86号에 依據; 이하 조선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1946년)이라 칭함)이 공포(영문·국문)되었던 資料를 NARA의 RG 407¹⁾ 문서에서 發掘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2004년 2월 NARA의 RG 554에서 발굴된 미군정청에 의하여 공포된 1948년 7월 5일 공포된 영문 원본의 「朝鮮海岸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해당하는 곳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이다(III).

셋째, 현재 한국에서 현존하고 있는 미군정법령집의 종류와 상태를 분석하여 본다(IV). 넷째, 미군정법령은 대부분 미군정청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그러므로 미군정법령과 미군정청 관보와의 관계를 알아본다(V).

다섯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한국헌정사가 펴내는 법령집은 기존에 수집·발간되어져 있는 법령집 등의 상태와 내용들의 계보를 정리하여 보고, 포고 내지 법령들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충·정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VI).

끝으로, 이 논문은 미군정법령집의 해제이므로 기존에 발표된 논문도 조금은 인용함을 밝혀둔다.

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립기록문서청(미국); 이하 NARA로 약칭. 또한 그곳에서 사용하는 문서분류 기호로서 Records Group 407(문서철 분류번호; 이하 RG 407) 등으로 나타낸다. NARA에 관한 소개서는 정용욱, 미군정 자료연구(선인, 2003) 참조.

II. 美軍政法令의 根據와 類型

1. 美軍政實施의 根據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드디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동년 9월 7일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이 한국의 역사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인다.

이는 동년 8월 15일 드디어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²⁾하고, 8월 22일, 38도선 이북의 일본군 제34군사령부 사령관 구시후지(櫛淵: 중장)가 소련군 제25군사령관에게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서, 소련군의 일본군 무장해제는 38선 이북이 되었다.³⁾

한편, 동년 8월27일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cArthur, 1880~1964)는 당시 오키나와(沖繩)에서 美 제10군 산하 24군단을 지휘하던 하지(John R. Hodge)⁴⁾에게, 미군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진주범위는 38도선 이남이며, 하지를 韓半島 進駐 미군, 즉 미군정청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미군정청이라는 명칭은, 처음에는 USAMGO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of Korea)으로 사용하였으며, 1946년 1월 16일(군정법령, 제43호)까지는 USAF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Forces in Korea; 재조선미육군사령부)으로, 군정법령 제44호(1946. 1. 22.)부터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으로 사용된다. 이는 미군정이

2) 終戰記錄에 관하여는,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錄: 米ソ兩軍駐屯の進駐と日本人の引揚」(東京; 岩南堂書店, 1964) 참조

3) 日本厚生省復元局, 「對蘇作戰記錄」第2卷, 第5編, “朝鮮北部方面の狀況” 森田芳夫, 上掲書(1965), 86; 東亞日報, 1982. 4. 9., “秘話 美軍政三年”; 金雲泰, 美軍政의 韓國統治(博英社, 1992), 65쪽에서 재인용; 또한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22~37쪽 참조

4) 그의 개인적인 신상에 관하여는, 리처드 라우터백 지음, 국제신문사 출판부 옮김, 한국미군정사(Richard E. Lauterbach, *Danger from the East*,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ew York and London, 1946, 1947) 중 제2부 「Hodge's Korea」를 번역한 것임(돌베개문고, 1984), 37쪽 이하 참조.

USAFIK과 USAMGIK으로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⁵⁾ 그러므로 재조선 미육군사령부군정청(USAMGIK)은 1946년 1월 14일부터 군정장관을 장으로 하여 미 제24군단의 한 부대단위로 미군정청이 정식으로 설치된다.⁶⁾

이렇게 하여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미군과 소련의 상륙을 계기로 해방된 조선은 또다시 50년이란 세월을 남과 북의 이름으로 존재한다.⁷⁾

2. 美軍政法令의 根據와 類型

(1) 美軍政法令의 根據

미군정이 北緯38度以南의 조선에서 실시되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태평양미육군최고사령관 맥아더는, 1945년 9월 7일, 포고 제1호로써 「조선주민에게 고함」(To the People of Korea)에서, 「일본국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대본영하의 지휘군은 本日 北緯三八度以南의 朝鮮地域을 占領함」⁸⁾이라고 포고하고, 동호 제1조에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함」, 동호 제6조에서는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표하여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포고문에서, 미군정의 점령지역의 범위, 즉 통치권의 범위와, 행정권

-
- 5) 金雲泰, 上揭書, 76, 290쪽 참조. 또한 현재 한국학계의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 당시로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없었으므로 「駐韓」 또는 「在南朝鮮」이라고 하면 안 되고, 「在朝鮮」이라는 번역이 옳다고 본다. 이는 사실상의 호칭과 법률적인 의미는 다르기 때문이다.
 - 6) 鄭容都, 1947년 미군정 내 정치참모부 설치논의와 그 함의; 外大史學 第12輯(2000년 8월), 416쪽 참조.
 - 7) 이렇게 시작된 조선에서의 미군정의 법적성격에 관하여는, 崔京玉, 「制憲國會의 成立史: 美軍政法令과 관련하여」, (公法研究, 第31輯 第5号, 韓國公法學會, 2003. 6.), 92쪽 이하 참조.
 - 8) 한국법제연구원, 미군정법령총람(한국법제연구회, 1971), 1쪽.

과 입법권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동 포고 제2호와, 미군 정청의 법령 제72호(군정위반에 대한 범죄 ; 1946. 5. 4.)에 미군정의 지위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는 美軍政廳이 필요한 경우에 조선에서 발할 수 있는 公布의 類型과 공포를 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조선에서의 잠정적인 입법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 美軍政法令의 類型

그 類型을 보면, 한국이 해방되면서 1945년 9월 7일 미군정이 北緯38度以南의 조선에 도착하면서, 태평양양미육군총사령부(GHQ, U.S. Army Forces, Pacific, Office of the Commending General, Yokohama, Japan)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발행한 관보에 포고 제1호(조선주민에게 고함)에서 3호까지, 그 제4호는 1946년 7월 1일 동 기관에서 東京으로 이동하여 간행한 관보에, 在朝鮮美軍政廳이 1945년 9월 24일 美軍政法令 第1号를 시작으로 하여 국내에서 발간하는 관보에 각가지의 法令(Ordinance), 行政命令(Executive Orders) 部令(Department Orders) 및 局令(Bureau Orders), 指令(Bar Admisson), 訓令(Instructions), 一般告示(General Notice), 公告(Public Notice), 規則(Regulation) 등을 수시로 주로 미군정청 공보부⁹⁾가 발행하는 관보(Official Gazzette)를 통하여 공포된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군정청이 조선에서 1945년 9월 7일 업무를 시작하고, 군정기구의 조직은 9월 20일에 구성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관보발행의 방법은 內容 및 部署에 따라 독립해서 편성하되 최종발행

9) 법령 등을 내용별로 각각 발행하였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은 官房總務課였다고 한다 ; (자세한 것은, 崔貞泰 著, 『한국의 官報 : 조선조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까지』(아세아문화사, 1992), 117쪽, 127쪽 참조 ; 박찬표, 전계서, 125쪽, 302쪽 참조. 참고로 1945년 11월 30일 미군정법령 제32호에 의해 「朝鮮政府官房情報課」를 「公報課」로 변경된다. 그 이후에도 법령 제47호, 제64호를 거치면서 「公報部」로 개칭된다.

자는 처음부터 군정장관이 서명 발행하였다.¹⁰⁾ 그러므로 법령 戶數 順으로 날짜 順이 되어 있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공포된 법령 등을 수집하여 편찬된 법령집들에는 布告(Proclamation), 法律(Publik Act), (南)朝鮮過渡立法議院決議案(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Legislative Resolution, 1947. 6. 18.), (南)朝鮮過渡立法議院院法(KILA Rules of Assembly;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현재는 영문만 발견됨)도 포함되어져 있다. 이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의 정식호칭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보기로 한다.

참고로 미군정법령을 보는 데는 몇 가지 특징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첫째, 각종 법령 기타 다른 종류의 습이나 規則 등의 공포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太平洋美國陸軍司令部 布告는 太平洋美國陸軍司令部最高指揮官인 맥아더의 이름으로,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布告는 在朝鮮美國陸軍司令官에 의해서 공포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法令(Ordinance) 등은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美軍政庁이 발하는 것으로 朝鮮軍政長官의 이름으로, 部습은 역시 朝鮮軍政長官의 指令 내지 指示에 의하여 局長의 이름으로, 指습이나 管理습·管財습도 역시 朝鮮軍政長官의 指습으로 管理官·保管長의 이름으로, 規則은 軍政長官의 指습에 의하여 關聯行政官·行政處長의 이름으로, 문서 말미에 담당자의 계급과 성명 등을 밝히고 서명을 하는 형태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법률(Public Act)은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인준하는 형태로 공포되었으며, 결의안(Resolution)은 조선군정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둘째, 입법·행정권한에 있어서, 미군정법령 제118호(1946. 8. 24.)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Establishment of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제5조에 따르면, 「朝鮮過渡立法議院」¹¹⁾이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복리와 관계되는

10) 관보에 공포된 법령들의 색인은, 미군정청관보(원주문화사, 1991), V. 1. p.1~19, 1945년 9월 7일부터 1946년 9월 30일까지 공포된 목록이 영문, 국문이 다 소개되어 있다.

11) 최정태, 상계서, 118쪽에서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항 및 군정장관이 의탁한 사항'에 관하여만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으므로, 그 날 이후의 법령이라고 하여 모두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조선군정장관이 직권으로 제정한 법령이 더 많았던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정에 관한 한 중요한 사항에 관련하여서는 조선과도입법의원은 행정권이나 입법권의 권한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셋째, 판보에 법령 등을 발표할 때의 발행형식은 문서 말미에 조선군정장관의 계급과 성명 등을 밝히고 서명을 한다.

넷째, 법령의 공포방법 중 특이한 것은 그 법령의 부속법이나 시행세칙을 공포할 때에 동시에 부속법 내지 시행세칙으로 첨가해서 발표하면서 그러한 부속법 내지 시행세칙에는 마지막에 별도의 공포청이나 조선군정장관의 서명·날인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즉 법령 제86호(朝鮮警備隊及朝鮮海岸警備隊, 1946. 6. 15.)에 따른 부속법 내지 시행세칙인 「조선국방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1946. 6. 15.)¹²⁾이나 제91호(1946. 5. 28.)에 의한 「특허법」, 그리고 제175호(국회의원선거법; 1948. 3. 17.)¹³⁾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법시행세칙」(1948. 3. 22.) 같은 경우가 그러하다.

다섯째, 布告에는 太平洋美國陸軍司令部와 美軍政廳이 발한 것과 법률은 南朝鮮過渡政府가 발한 것으로 号數에 따라 管轄이 달라진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
- 12) 우선 조선국방경비대는 경찰력지원을 위해 45년 10월부터 추진되던 근대창설의 계획 결과에 의해 19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조직되었다; 박찬표, 『전게서』, 117쪽 참조. 그리고 조선(국방)경비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는 同書, 82, 115, 117, 250~251, 253, 255쪽 등 참조; 김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증언』(한국문원, 1995), 118쪽 이하 참조. 오히려 이 책에서는 조선국방경비대 설립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군창설에 직접 관여한 하우스만이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국방경비대 창설기획문서는 RG 332, Box 5; 특히 정용욱, 『전게서』, 309, 412, 460쪽 참조. 그리고 이 책에는 특히 RG 332 file의 상세목록이 잘 정리·설명되어 있다.
- 13) 참고로 남조선과도정부법을 제5호인 「입법의원선거법」을 개정하는 절차없이 미군정청이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공포한 것이라고 한다; 김혁동, 『美軍政下의 立法議院』(범우사, 1970), 138쪽; 崔京玉, 앞의 논문(주 7), 112쪽 참조.

여섯째, 미군정법령의 제목은 대부분은 원래 정하여져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일부 필자진이 되도록이면 내용에 맞추어 간단한 제목으로 정하여 삽입시킨 것도 밝혀둔다(아직은 미발간 상태이다).

이렇게 발행된 법령의 내용들을 분석·정리하여 놓은 논문들¹⁴⁾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그와 같은 분석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다만 全 條文이 어떠한 내용에 관한 것이며, 각각의 조문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그러므로 흔히 세간에서 「美軍政法令集」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별도의 「美軍政法令集」이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미군정의 점령기간인 3년 동안 공포되었던 여러 법령 등을 후일에 그 원본들을 수집하여 원본인 채로, 또는 그것을 影印한 것 내지 새로이 인쇄한 것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군정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완전한 미군정법령집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역사의 책무를 느낀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대한 완성을 향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우선적으로 발굴된 자료에 관한 것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III.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西紀 1946年 6月15日；法令 第86号에 依據」의 자료 발굴(RG 407, 554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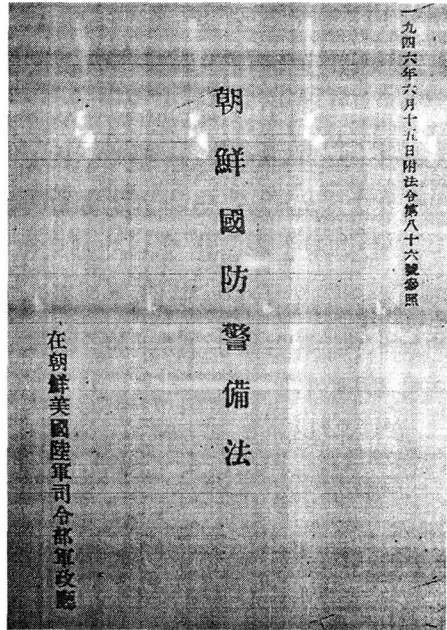
1.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1946)·「國防警備法·海岸警備法；흔히 구 國防警備法이라고도 함」(1948)의 관계

14) 최정태, 상계서, 125~148쪽에서는 공포된 각종 종류별 법령 등이 체계적으로 제목만 소개되어 있다; 문광삼, 『미군정기의 헌정사: 한국헌법사』(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330쪽 이하에서는 중요한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1948년 7월 5일 공포, 8월 4일 효력발생의 「國防警備法·海岸警備法; 흔히 ‘구 국방경비법’이라 칭함」의 출처 미상으로 특히 법조계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자료가 발굴되었다. 발견된 자료는 물론 국문과 영문이 다 존재하며, 다음과 같다.

즉, RG 407 문서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46년 6월 15일자로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이라는 이름으로 「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과 「朝鮮海岸警備法」(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西紀 1946년 6월 15日附, 法令 第86号에 依據)이 공포(영문·국문)되었던 것이 발견되었다(자료 1).

그러므로 위의 발굴된 자료 RG 407 문서의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1946년) 표지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Description of Contents

- (1) Box No. 2071 Folder No. 3, (2) Title : Military Government
- (3) Period : Oct. 1945-Feb. 1947, (4) Class : (5) List of Papers : Included,
- (6) Note : Includes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nstabulary Prepared by Headquarters, USAMGIK,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 (7) Roll No. : Sheet No. : ,(Compiled by National Diet Library)

위의 박스 안에 「朝鮮國防警備法·朝鮮海岸警備法」(1946)이 들어 있었다. 그 자료에서 공포일을 보면, 법령 제86호(1946. 6. 15.)에 의거한 1946년 6월 15일이고, 공포청은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이며, 그 당시 조선군정장관은 「아취·엘·러취; Archer L. Lerch,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in Korea」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4일 창설되었다. 이는 조선경비대로 개칭된다.¹⁵⁾

그런데 그 체계를 보면 「조선해안경비법」은 「조선국방경비법」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제는 나중에 1948년의 두 경비법의 체계를 살펴볼 때에도 사전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편, 구 국방경비법(1948년)이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3호로 제정된 군형법과 같은 날 법률 제1004호로 제정된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위의 출처미상의 1948년 7월 5일자 공포된 국방경비법을 일컫는다.

위에서 보듯이 1946년의 두 경비법의 공포청은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으로 미군정법령 제86호의 공포청과 공포일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즉 1946년의 이 두 경비법은 미군정법령 제86호에 의거 그 부속법 내지 시행세칙으로 미군정청이 직권으로 공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 국방경비법(1948년)에는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포청도 없으며, 판보를 통하여 공포된 자료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로선 경비대의 무기, 훈련과정이나 장비에 관한 자료는 부분적으로 나와있다.¹⁶⁾ 그러나 이번에 이것에 관하여 중요한 단서가 될 자료를 하나 더 발굴하였다. 즉, 한국 헌정사팀의 일원으로서, 2004년 2월 10일부터 17일 사이의 NARA를 방문해서 RG 554, Box 17, AG file¹⁷⁾ 320에서 영문으로 된 「조선해안경비법」(Articles

15) 참고로 조선해안경비대(KCG)의 창설에 관한 부분은, 군사편찬위원회, 주한미군사고문단문서(KMAG)(1999), 88, 123, 152, 161쪽 이하 참조

16) 상계서, 233, 254쪽 이하 참조

17) Adjutant General file(부관파일)이란, 24군단 사령부 부관부 사령실 자료를 뜻한다. 미국식 문서처리 방식은 군명령이 사령관의 서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령관 명에 의한 부관 ○○”라는 형식으로 부관이 서명하게 되어 있다; 정일화, 상계서, 122쪽 참조; 정용욱, 전계서,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의 원문을 다시 발견하였는데, 그 문서 앞에 다음과 같은 확인이 있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옮겨 본다.

5 July, 1948

「By virtue of the powers in me vested as Military Governor of Korea, I prescribe the following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direct that they be published for the government of all concerned These articles shall be in force effect in the Korean Coast Guard on and after 4 August, 1948 except that their provisions do not supercede provisions of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ated 15 June, 1946, with respect to acts done or offenses committed prior to 4 August 1948.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US Army

Military Governor of Korea」

라고 적혀 있다.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앞서의 1946년도의 「朝鮮國防警備法」과 「朝鮮海岸警備法」의 구조는, 조선해안경비법은 국방경비법의 부록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공포청이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역 추적하여 보면, 아직까지 비록 그 표지를 찾지 못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 발간되어져 있는 미군정법령집들에는 1948년도의 국방경비법은 공포년도가 檀紀表示 「國防警備法; 4281. 7. 5. 公布/4281. 8.4. 效力發生」, 해안경비법도 「海岸警備法; 4281. 7. 5. 公布/4281. 8.4. 效力發生, 改正; 四二八四, 二, 二八, 法律 177号」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RG 554에서 발견된 해안경비법(1948년)으로 미루어 볼 때 국방경

비법(1948년)도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윌리엄 딘 ; William F. Dean, Major General US Army Military Governor of Korea」이 직권으로 제정하여 공포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안경비법은 국방경비법의 부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유추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1948년의 구 국방경비법에는 1946년도의 조선(국방)경비법처럼 몇호 법령에 의거한 부속법인가를 표시해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1946년의 조선경비법을 개정하지 않고 새로 제정한 것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보다시피 1948년 7월 5일의 해안경비법의 서두에 윌리엄 딘 군정장관이 1946년의 해안경비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48년의 국방경비법·해안경비법도 역시 미군정법령 제86호에 근거하여 1946년의 조선경비법·해안경비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하나 덧붙일 것은 지금까지 국내에 수집되어 발간되어져 있는 미군정법령집의 해안경비법에는 1948년 7월 5일 공포, 8월 4일 효력발생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 개정 1951년 2월 28일, 법률 177호라고 적혀 있다. 즉 이는 1948년의 해안경비법이 아니고 개정된 1951년의 해안경비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RG 554에서 발굴된 이 영문의 해안경비법은 현재까지의 「국방경비법·해안경비법」의 출처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946년의 「朝鮮國防警備法」과 「朝鮮海岸警備法」이 공포될 당시는 이 조직에 관한 법령들이 그다지 정비되지 않았으나, 1948년의 「國防警備法」과 「海岸警備法」은 상당히 정비되어 있다. 즉 앞의 두 법의 조문은 각각 76개조와 4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나, 후자는 각각 115개조와 86개조로 전자보다 그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경비대·해안경비대의 숫자를 한번 비교하여 보면, 1946년 말에 약 5천명 수준에서, 1947년 중반에는 1만 2천명 정도, 1948년 초에는 2만 3천명 정도, 이후 미군철수에 대비하여 5만명 정도, 6·25직전에는 10만명까지

확보되었다.¹⁸⁾

그리고 1948년 8월 29일 국방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고, 1948년 9월 5일에는 국방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해안경비대는 대한민국 해군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왜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까지 이 국방경이법·해안경이법이 적용되었는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연구과제이다.

한편, 위의 「國防警備法·海岸警備法」(1946년)은 미국의 「미육군전시법」(Articles of War)을 속성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1946년 그 당시 한국점령군 사령부의 조선경비대사령부 창설요원으로 배속받아 1981년에 한국을 떠날 때까지 거의 40년간을 한국에서 보낸 미군중위였던 하우스만(James H. Hausmann, 1918—최근에 사망)¹⁹⁾에 따르면, 그 당시 한국에는 군사법이 없었으며, 미군사 훈련법, 조직법, 군통제법, 군형법 등을 일본 중앙대 법대를 나온 법무관 김완용, 역시 통위부에 있는 일본 중앙대 출신 이지형 등이 번역 작업을 하였다.²⁰⁾

한편 미군정청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가 그 명칭을 미군정법령 제86호(1946. 6. 15.)에 의해 統衛部(국내경비부)(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²¹⁾

18) 박찬표, 전게서, 172~173쪽, <표 8> 참조; 짐 하우스만/정일화 공저, 전게서, 133쪽 이하 참조 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하우스만의 증언이 아주 정확함을 알 수 있다.

19) 「1918년 2월 미국 뉴저지주 출생, 1941년 미육군소위, 1945년 발지전투공로로 동성무공훈장, 1946년 미군정요원(육군대위)으로 한국에 파견, 1946년 8월 국방경비대 제8연대(준천) 창설 연대장, 1946년 10월 미군사고문단참모장으로 한국군창설작업, 1948년 여순반란사건 진압진두지휘, 1950년 6월 미군고문단참모장으로 6·25 맞음. 1951년 미국방부(펜타곤) 한국담당정보과장, 1952년 주한미군단재배속, 1968~1981년 전역후 주한미8군사령관 특별고문으로 재직,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1995년 당시), 현재는 사망」; 그의 이러한 한국 생활이 출판되었는데, 정일화 공저,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대위 하우스만 증언』(한국문원, 1995) 참조; 참고로 정일화는 한국일보 기자로 직접 하우스만과 만나서 한 인터뷰 등을 정리한 책으로 참으로 가치있는 자료라 볼 수 있다. 아마 그를 직접 만나면, 더 좋은 자료도 나올 법하다.

20) 정일화, 상게서, 134쪽; Tillotson Lee S. The Articles of War Annotated(Harrisburg, 1944)/Alyea, Louis F, Military justice under 1948 amended articles of war(Oceana Publication, 1949)도 참조.

21) 위 RG 407 문서의 正誤表(1947. 2. 20.)의 공포청이 統衛部로 되어 있다; 또한 박찬표, 전게서, 115, 117, 172쪽 참조. 참고로 이 책의 117쪽에는 1946년 3월로 통위부가 설치되었다고

로 바꾸는데, 그 이유는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대표들이 남조선에 국방부²²⁾를 두고 군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남조선 정부 수립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는 이복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뜻을 지닌다고 주장하였으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장교들의 칼, 권총 등 무기휴대를 금하는 명령을 내리고, 건물도 중앙청을 떠나 외딴 남산 기슭으로 옮겼다.

통위부는 경비대사령부의 상급기관이었다. 그리고 1946년 9월 중순께 이놀드(A. V. Arnold, Major General US Army Military Governor in Korea; USAMGIK) 군정청 장관에 이어 러취장군이 부임하여 통위부장을 한국인으로 교체, 미군은 고문 명칭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통위부장에는 柳동렬 장군이 임명되고,²³⁾ 프 라이스 대령이 통위부 고문이 되며, 모든 결재권은 고문관이 가진다.²⁴⁾

2. 구 국방경비법과 헌법판례(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 소원, 구 국방경비법위헌소원; 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와의 관계

위 RG 407에서 발견된 1946년의 「조선경비법과 조선해안경비법」은 앞에서 본 문제가 되고 있는 1948년도 두 경비법(흔히, 구 국방경비법)의 前身이랄 수 있을 것이며, 이에 관한 사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법조계, 학계에서 좀 더 깊이 재조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 참조할 것). 그리고 이 판례에서 보안관찰법이란 1989년 6월 16일 법률4132호로 전문개정된 것이다.

하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46년 3월에는 미군정법령 제28호(1945. 11. 13.)가 제64호(1946. 3. 29.)에 의해 「국방사령부」에서 「국방부」로 바뀐 시점이다.

22) 미군정법령 제28호, 제64호 참조.

23) RG 332, Box 45, September 24 참조.

24) 하우스만, 상세서, 124쪽 이하 참조.

예를 들면,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재판요지 나)에서는, 위 문서에서 발견된 「朝鮮國防警備法」(Articles for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을 굳이 “조선경비청에 대한 규정”(Articles for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 이 표현은 미군정법령 제86호 제4조의 표현), 또는 “朝鮮警備法”으로 번역하여 놓고 있는 것은 이 문서를 못 본 것으로 보이며, 그러면서 이를 구 국방경비법의 전신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동판례, (2) 구 국방경비법의 성립경위 중 다. 구 국방경비법의 제정·공포 경위).²⁵⁾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위의 두 조선국방경비법(1946. 6. 15.)과 국방경비법(1948. 7. 5.)이 제정된 시점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 입법의원은 미군정법령 제118호(1946. 6. 15.)에 의해 설립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개원해서, 남조선과도법률 제12호(조선과도입법의원의 해산, 1948. 5. 19.)에 의해 해산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보았듯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법령 제118호 제5호에 의해 그런 정도의 입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편, “朝鮮警備法”이란 용어는 미군정법령 제86호(朝鮮警備隊及朝鮮海岸警備隊, 1946. 6. 15, 조선군정장관 미육군소장 아·취·엘·러·취) 제1조에서 국방부를 국내경비부로 개칭하고 군무국을 폐지한다. 同號 제2조·제3조에서 조선경비대·조선해안경비대가 창설되고, 이는 국내경비부의 조선경비관리국·조선해안경비관리국하에 둔다고 규정하여 두었으며, 나중에 正誤表에서 「朝鮮國防警備法」을 「朝鮮警備法」으로 正誤表(一九四七年二月二十日, 統衛部)에서 바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1946년 6월 15일자의 「朝鮮國防警備(隊)法」은, 처음부터 「朝鮮警備(隊)法」으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위 판례에서 「재판요지」 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구 국방경비법

25) 동 판결 이유 2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미군정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나 미군정청에 의해서 제정·공포된 일이 없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재판은 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수감도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한다.

제32조(敵에 대한 教授, 通信連絡 또는 幫助), 제33조(間諜)는 1948년 7월 5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위 문서의 1946년의 조선국방 경비법 제23조(敵에 대한 教授, 通信連絡, 幫助), 제24조(間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판례에서의 추정은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이 국방경비법과 관련된 헌법적 문제²⁶⁾는 참으로 많이 산적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논문으로 미루기로 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는 단지 미군정법령집의 해제이므로 이에 관한 주제만을 다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1948년의 흔히 「구 국방경비법」은 1948년 7월 5일 공포되어,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군형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까지 그 효력에 의문없이 시행되었고, 그 이후 1951년경부터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자료 등에서도 구 국방경비법이 유효한 법률임을 전제로 인용 또는 기재하고 있으므로 관보를 통해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유효한 법률임을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 98아702). 또한 구 국방경비법은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서울지방법원 99카3931)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판례들이 그 출처를 추정만 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루어 볼 때, 이번 법령집 발간에 위 문서를 추가하는 것이 그 의의를 한층 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미군정법령집 발간에 앞서 현재까지 국내에 수집 내지 발간되어 있는 미군정법령(집)에 관하여 년도별로 소개하여 그 편집되어진 내용과 상태의 계보를 살펴보고 그 누락된 부분들을 추가하는 것으로 재발간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26) 98헌바86/99헌바36/서울고등법원98아632, 98아657, 98아762/서울지방법원99카713931 등, 기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 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 등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0헌마238·302(병합)과, 한인섭 편, 韓東錫 사건(국방경비법 제65조와 관련하여) 『거창양민학살사건자료집』(III)(재판자료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자료집, 10쪽 이하 참조. 또한 문준영,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법학박사학위논문, 2004), 210쪽 이하 참조.

IV. 現存하는 美軍政法令集의 分析

1. 現存하는 美軍政法令集의 体系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령집에 근거하여 국내에 현재까지 간행되어져 있거나 원본으로 남아있는 현존하는 미군정법령집에 관한 체계들에 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법령집들에는 미군정법령 뿐만 아니라,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 그 당시 군정장관 들의 서한도 참고로 포함시켜서 간행되어져 있다.

아래에 그 간행되어져 있는 책들을 소개를 하겠지만, 원본이 있어도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일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국회도서관이나 정부기록보존소에서조차 그 전부가 갖추어진 원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6·25전쟁을 치르면서 원본을 제대로 보관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면서 특히 중요한 공문서의 보존 방식을 연구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의 관점에서 이 법령집들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은 흔히 미군정법령이 제1호(1945. 9. 24.)부터 제219호(1948. 8. 12.)까지인 걸로 알려져 있으나, 실은 1947년 5월 17일자의 법령 제141호, 즉 3·8선 이남을 「남조선과도정부」라 부르기로 하는 법령부터는 「남조선과도정부의 법령」으로 공포하되 미군정청이 認准하기로 되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법령 제1호부터 제140호까지는 「미군정청법령」이고, 법령 제141호부터 제219호까지는 「남조선과도정부법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법령 제135호(1947. 3. 15.)부터 제199호(1948. 5. 29.)까지는 민정장관이 건의하고 조선군정장관이 認准하는 형태이나, 조선과도입법위원이 법령 제118호에 의해 1946년 8월 24일 창설되었으나, 새 정부 수립을 목적으로 1948년 5월20일 해산되었기 때문에 민정장관이 건의하는 형태는 사라지고 법령 제200호(1948. 6. 21.)부터는 조선군정장관의 이름으

로만 공포된다.

이는 법령 제118호(1946年 8月 24日) 제5조에 의해,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령은 군정장관이 확인과 동시에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공포하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또한 특색인 것은, 법령 제1호부터 제99호까지는 아래에 「Ordinance No. 1」이라는 형태로 공포되었고, 제100호부터 제123호까지는 관보 위쪽에 「Official Gazette, USAMGIK, Ordinance No. 100, 25 July 1946」이라는 형태로, 더 나아가 1946년 11월 13일자인 법령 제124호부터 제219호까지는 영문(국문은 발견되지 않음)으로 된 관보 아래면에도,

「軍政廳 官報 法令第一二四号 一九四六年 十一月十三日」

의 형태로 기록해두고 있다.

또한 1946년 8월 10일자 「서울시헌장」(Charter City of Seoul)의 원본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표시가 있다. 적어도 이 표시는 1948년 8월 12일 공포된 법령 제219호까지는 나타나고 있다. 즉, 관보의 발간형태가 점점 체계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공 1999상, 389 참조)에서 1948년 7월초부터 미군이 대한민국에 정권을 이양하는 단계에서 미군정청 관보가 발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료에 관한 정보 부족에서 나온 판단으로 보인다.

셋째, 현재까지 수집 내지 발간되어 있는 미군정법령집으로 영문, 국문, 일문이 대부분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원주문화사 출판의 관보 이외에는 주로 영문, 국문 또는 日文 등이 따로 갖추어져 있다. 그렇다고 어디에든지 모든 조문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은 한 권도 없다.

물론 日文은 해방이후 日人官吏를 미군정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계속 사용되다가 1946年 2月부터는 韓美兩局長제도가 실시되면서 일인관리가 일본으

로 돌아감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다.

넷째, 미군정법령에 있어서는 각 법령의 시행령에 준하는 법(률)들이 동시에 또는 후에 공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규칙 내지 부속법 등의 문서 말미에는 별도의 조선군정장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거로 문제의 「조선국방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1946년)과 「구 국방경비법」(1948년)의 문서 말미에 별도의 조선군정장관의 서명·날인이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를 모르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구 국방경비법」(1948년)을 공포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1946년 6월15일자의 「조선국방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은 미군정법령 제86조에 의거해서 공포된 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에서 그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앞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늦으나마 발견되어 문제의 「구 국방경비법」(1948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발굴한 셈이다.

2. 국내에 수집·발간된 「미군정법령집」의 계보와 문제점

이하에서는 국내에 현존하는 모든 미군정법령집의 계보와 그 특징 내지 결함 또는 누락된 부분을 찾아내어 보완하고, 또한 각 법령집 등의 체계들을 점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軍政廳編, 『美軍政法令集』(상명대 所藏)

상명대에 위 법령집 종류가 여러 가지로 원본, 복사본 6권이 있는데, 이는 기증받은 것으로 상명대 서울 도서관에 대출실 5층(분류기호: 348-51002)에 비치되어 있다.

전국대학교도서관 종합정보서지란에서는 日語版이라 적혀있으나, 이는 원본을 수집하여 두었던 누군가가 기증한 것으로 목차도 순서도 없이 나열되어

있으나, 군데군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 영문·국문이 있고 또한 다른 법령집에 없는 日語版들이 다수 있을 뿐이다.

물론 6권 중 원본은 두 권이고 복사본도 4권 있다. 그 복사본 4권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들을 복사해서 묶어 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 원본 2권에는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포고 제1호부터 시작하여 대개 1947년 9월 정도까지의 각종 법령이 영문·국문·일문 등이 순서없이 수집되어져 있다.

둘째, 그 복사본 4권의 표지에는 각각 「美軍政法令集」 제1권부터 제4권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 제1권에는, 1945년 법무국령 제1호부터 시작하여 각종 지령, 훈령 등이 1948년 5월 25일까지 실려있다. 물론 대부분 영문·국문·일문 등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다고 전부다 세 가지 종류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그 제2권에는, 미군정법령 제114호부터 제175호까지 영문·국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제3권에는 미군정법령 제175호부터 제211호까지 역시 국문·영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즉 제211호부터 제219호는 누락되어 있으며, 이후 대부분의 법령집 등에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한다.

그 제4권에는, 1946년 8월10일의 서울시헌장(Chater City of Seoul)(영문만 있음)이 있으며, 「朝鮮過渡立法議院院法」(KILA Rules of Assembly;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도 날짜 미상인 채로 영문만 있으며, 미군정청포고,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훈령, 지령 등이 순서없이 배열되어 1948년 5월 정도까지의 것들이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실은 국내에는 위의 것 보다 앞선 「南朝鮮過渡立法議院法案」²⁷⁾이

27) 鄭宗燮 校勘·編, 『韓國憲法史文類』(박영사, 2002), 112~122쪽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 원속기록』 제1권, 167~175쪽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 통과된 안이 아니라 그 날(1946. 12. 27.; 院法修正案報告) 배포된 別紙인 것으로 추정된다. 同속기록 145쪽. 또한

날짜 미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1946년 12월 27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 기록 제1권 제8호의 마지막에 첨가(101개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의 「南朝鮮過渡立法議院法」²⁸⁾은 그 직후에 이것이 수정 가결된 것(97개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위에서 본 입법의원의 영문호칭에서도 「SKILA」와 「KILA」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원주문화사의 미군정청관보 제3권에 역시 영문으로 날짜 미상으로 나와 있으나, 가결된 시점은 아마도 1946년 12월 27일 이후의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여기에도 97개조의 조문이 있다. 그런데, 이 관보에는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문서 「KILA Rules of Assembly ;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Rules of the Assembly」 아래 면에 「軍政廳 官報 南朝鮮過渡立法議院院法」으로 나와 있다.²⁹⁾ 이것 역시 문서 말미에 공포청도 공포날짜도 없다. 그런데 이 법은 1947년 1월 22일 미군정청에 의하여 영문으로 번역·공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그런데, 지금까지 보아 온 「(南)朝鮮過渡立法議院法案」은 미군정청의 미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해 미군정청으로부터 촉탁을 받아³¹⁾ 立法議院院法을 만들면서 미군정법령, 또는 공식적으로는 비록 「朝鮮過渡立法議院」(KILA)이라고 하나, 그렇게 성립된 의회에서 그 제118호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통일을 염두에 둔 의회라는 의미로 1946년 12월 27일 제1회 제4차 회의에서 자주적으

(院法草案) 92쪽 참조.

28) 미군정법령 제118호(朝鮮過渡立法議院의 創設, 1946. 8. 24.)에 의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입법의원의 정확한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南朝鮮過渡立法議院」(SKILA)이 아니라 「朝鮮過渡立法議院」(KILA)이다. 또한 미군정법령 제141호, 南朝鮮過渡政府법률 제12호(1948. 5. 19. 朝鮮過渡立法議院의 解散) 참조.

29) 『美軍政廳 官報』(원주문화사, 1991), V.3. 523~536쪽.

30) RG 332. Box 84,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ure Assembly-Rules of the Assembly-, English translation, Office of Adviser to Director, Department of Justice,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22 January 1947. 또한 그 이외에도 조선과도입법의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 파일에 다양하게 들어있다.

31) 동 속기록 2쪽 참조.

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SKILA)으로 통칭할 것을 통과시킨다.³²⁾

이와 같이 미군정하의 過渡政府下에서는 過渡立法議院을 두고 미군정청이 공식으로 부른 호칭(朝鮮過渡立法議院)과, 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자주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호칭(南朝鮮過渡立法議院)이 이원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하여 1946년 12월 30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法」을 통과시키나, 관보에 발표하지는 않는다.³³⁾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朝鮮過渡立法議院」이 의도적으로 자주성을 찾고자 자체적으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으로 하는 칭호를 통과시키고, 또한 「南朝鮮過渡立法議院院法」을 통과시키고도 조선군정장관의 인준을 받지 않는다든지, 관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그 院法 자체 내용에도 이 院法이 미군정법령 제118호에 의해서 미군정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들을 자손만대에 남긴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일부로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들을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본 미군정법령 제118호 제5조에서 비록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여도 미군정청의 확인과 서명·날인하고 관보에 발표하여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南朝鮮過渡立法議院院法」은 공포날짜도, 공포청도 없으며, 관보에도 발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나중에 미군정청 사법부가 번역하여 관보에 발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역사의 수수께끼는 이 속기록을 읽어보지 않고 단지 남겨진 문서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32)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권, 159쪽 참조. 그 이외에도 2, 42, 75, 117, 127, 129, 150, 156쪽 등 참조.

33)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권, 제10호(1946년 12월 30일), 258쪽, 또한 462쪽 참조.

(2) 內務部 治安局 編, 『美軍政法令集』(1956년, 1966년)

1956년판은 서울대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으며, 작은 책자로 590페이지에 달한다. 이는 그 당시 治安局 警務課 李種淳 警衛가 정리하고 法制室 第一局長이었던 朴一慶 氏가 감수한 것이다. 박일경씨에 따르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 관공서에 日本強占期法令은 잘 정비된 것들이 비치되어 있으나, 해방이후에도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미군정법령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법령들이 제대로 정비된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작업을 한 것이라고 이 책 서문 監修辭에 그렇게 적고 있다.

그리고 이 책에는 1956년 당시 이미 失效되었거나 廢止된 법령들도 표시해놓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미군정청법령」, 「남조선과도정부」라는 공포청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사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겠다.

또한 이 책 편제의 형식은 五編으로 되어 있으며,

第一編; 「太平洋美陸軍總司令部布告目錄」으로 포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第二編; 「軍政法令目錄」으로 되어 있으며, 법령 제1호부터 219호까지 실려 있다. 여기에 1956년 당시 失效 또는 폐지된 법령은 표시해둔 것이 특징이다.

第三編; 「過渡政府法律目錄」이 1947년 5월 6일 제1호부터, 1948년 5월 11일의 제12호까지 실려 있으며, 역시 폐지된 법률은 표시해두고 있다.

또한 출처 미상으로, 國防警備法(四二八一, 七, 五 公布, 八, 四, 效力發生)과 海岸警備法(四二八一, 七, 五 公布, 八, 四, 效力發生), 改正(四一八四, 二, 二八, 法律第一七七号)이 게재되어 있다. 또한 그 개정법은 최고형벌표로 형벌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이 두 경비법에 관하여는 서두에서 말한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第四編; 「立法決議案」이라는 제목으로, 1947. 4. 4., 第45次 會議 內容(文教厚生委員會 및 敵產對策委員會 報告內容), 1947. 4. 25. 第59次 會議 內容(歸還同胞日貨凍結解除에 관한 건, 재일동포재산보호에 관한 건), 1947. 3. 14. 第

31次 會議 內容(大學運營과 學長 및 教授의 建設的 意見 고려에 관한 건)이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이는 남조선입법회의 회의 내용이 실려 있으며, 아직 통과되기 이전의 결의안이었다. 그러므로 이의 정확한 내용은 위 4가지가 「南朝鮮過渡立法議院決議案」으로 1947년 6월 18일자로 공포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그러므로 국내에 발간되어져 있는 영인본 또는 복사본은 모두 통과되기 전의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第五編; 「過渡政府命令」이라는 제목으로, 목차에는 南朝鮮過渡政府命令第9号(非常全力委員會)의 내용이 남조선과도정부 비상전력위원회 위원장 에이씨 위케의 이름으로 공포날짜 없이 공포되어 있으나, 그 제13항에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함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4항 제3호에 1947년 12월 15일에 본령의 위반자는 처벌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령은 같은 날 공포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남조선과도정부의 행정명령 제9호에 따른 명령 제1호·제2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책에는 이 부분이 없이 추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집은 원본과의 차이가 많이 난다. 그 이유는 원본을 복사한 것이 아니고 타이핑한 것이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보겠다.

이로써 이 책은 총 59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한국헌정사탐도 1956년 복사본 소장). 또한 이 책을 1966년도에 再版한 것으로는 단국대(중앙)와 상명대(서울)가 소장하고 있다.

(3) 朝鮮行政出版社 發行, 軍政法令集(1946年)³⁴⁾

이는 아마 국내에 현존하는 출판된 책의 형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발행년도가 1946년 3월 20일로 되어 있으며, 편집형태는 한글과 영문이 교대로 실려 있다. 즉 일문은 전혀 실지 않았다. 물론 위아래에 관보표시는 없

34) 이는 서울대 법과대학 양창수 교수님께서 소지하고 있던 귀중한 자료(4번도)를 제공하여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으며, 해제도 없다.

실려 있는 내용은 ①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 4건, ② 일반고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③ 미군정 법령 제1호부터 제82호까지, ④ 인사행정규정 제2호(군정장관지령, 직위분류규정, 1946. 5. 16.), 제9호(근무규정, 1946. 5. 1.)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실려 있으며, 인사행정규정에는 영문에만 날짜가 표기되어 있고 국문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인쇄할 때에 표기 자체를 누락시킨 걸로 추정되며, 왜 이 두 규정만 실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아마도 수집되는 것만을 게재하였는가 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이 두 규정은 그 당시의 행정조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⑤ 인사행정통보 제1호(1946년 5월 15일), 그리고 이 책에서 찾아낸 자료 하나는 법령 제55호(정당에 관한 규칙, 1946년 2월23일)의 부칙(정당, 1946년 5월 7일, Political Parties), 「재조선군정장관의 지령에 의하여 민정장관 대리, 미국육군중좌 위잡·에이·그라스; William A Glass JR Lt Col Sig C/Acting Civil Administrator」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 제55호는 미군정청이 이승만식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만든 악법이라고 한다.

⑥ 일반고시 제5호 관련 부칙(石油生産品의 統制及配給, 1946. 5. 17.; 軍政長官의 指令에 依하여, 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代將, 제이·알·시스; J. R. Sheetz, Brigadier General, United States Army, Deputy Military Governor of Korea)를 마지막으로 신고 있다.

이 책의 체계를 보니까 이러한 자료를 아주 체계적으로 수집한 것 같지는 않으며, 수집되는 것만을 대강 정리하여 출판한 것으로 추측된다.

(4) 朝鮮行政學會 發行, 軍政法令集(제1호-130호까지 실려 있음.)(1947年)

이 책도 조선행정학회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것으로 출판일자가 1947년 4월 15일로 되어 있는 책 형태의 원본으로 아주 귀한 사료로 생각된다.

그 실려있는 내용은 발행당시까지 공포된 법령 제1호에서 제130호(1946년 12

월 11일)까지만 실려 있는데, 단지 국문만 실려있다. 분량은 총 19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론 해제는 전혀 없으며, 위아래의 관보표시도 전혀 없다.

그런데 위의 책과는 별개로 또 다른 형태의 조선행정학회의 발행으로 되어 있는 책이 한 권 더 있었는데, 발행년도는 역시 1947년으로 되어 있으며, 이의 게재형식은 영문과 국문이 조문별로 교대로 실려 있으며, 어디까지나 부분적으로 제100조에서 제128조까지만 실려 있었다.

(5) 法院行政處 出版, 美軍政法令集(大法院行政處 編)(1969年)(한글판)

이는 현재 대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위의 2)번 내무부치안국(1956년)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가 재발행한 것으로, 단지 차이는 폐지된 법률을 표시해두지 않은 것 뿐이다.

(6) 韓國法制研究會編, 美軍政法令總攬(國文版/英文版 I, II)(1971年)

이 책은 누군가의 해제도 없이 바로 목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편제는 다음과 같다. 이도 아마 기존에 있는 원본 내지 간행된 책들을 참고로 하여 편집된 것으로 추측된다.

第一編; 「太平洋美陸軍總司令部布告」에는 제1호(1945. 9. 7.)부터 제4호(1946. 7. 1.)까지 실려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部布告」이다.

第二編; 「南朝鮮過渡政府法律」에는 제1호(1947. 5. 6.)부터 제12호(1948. 5. 19.)까지의 내용과 출처 미상의 國防警備法(1948. 7. 5.), 海岸警備法(1948. 7. 5.)이 국문만 실려있다.

第三編; 「美軍政法令」에는 제1호(1945. 9. 24.)부터 제219호(1948. 8. 12.)까지 있으며, 법령 제118호에는 제10·11조가 누락되어 있다. 이는 법무부 소장에 있으므로 추가한다.

영문판에는 제212호부터 제219호까지의 영문 원본이 누락되어 있다. 이를 법

무부가 소장하고 있는 법령이 실려 있는 관보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보충할 계획이다. 원주문화사 출판의 관보에 제214호의 영문 원본은 있다.

국문판에는 법령 제204호, 제212호부터 제219호까지는 위와 같은 형태의

「軍政廳 官報 法令第一二四号 一九四六年 十一月十三日」

와 같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第四編; 「行政命令」에는 제1호(1947. 4. 22.)부터 제24호(1948. 6. 26.)까지 게재되어 있으며,

第五編; 「美軍政廳部令 및 指令」에는 局令, 處令, 委員會規則을 포함하고 있다.

第六編; 「南朝鮮過渡政府立法決議案」에는, 獎忠壇公園一帶는 國立公園으로 定함이 可함(1947. 4. 4. 第45次 會議 內容), 歸還同胞日貨凍結解除에 關한 案, 在日同胞財産保護에 關한 案(1947. 4. 25. 第59次 會議 內容), 大學運營에 關한 案(1947. 3. 14. 第31次 會議 內容)이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법령집에 실려 있는 것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지 의회의 회의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그 결의가 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것은 4가지 모두가 1947년 6월 18일 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발간되는 법령집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를 영인 내지 견본으로 하여 만든 법령집은 모두 그렇게 공포 전의 내용이 실려 있다.

그 의회명칭도 「南朝鮮過渡立法議院」(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³⁵⁾ 또는 「朝鮮過渡立法議院」(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³⁶⁾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의안도 南朝鮮過渡立法議院決議案(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Resolution)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한편 결의안은 입

35) 이 결의안 내용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라고 사용하고 있다.

36) 다른 미군정법령 조문, 제118호, 141호, 142호,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는 「조선과도입법의원」(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영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과는 달리 조선군정장관의 認准을 요하지 않는다.

第七編; 「美軍政廳布告」 제1호(1946. 2. 21.)부터 제7호(1948. 5. 28.)까지 있으며, 이는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포고 5개와 나머지 2개는 남조선과도 정부의 宣布令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법령집에 없고 號數도 없는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의 布告도 있어 추가한다.

第八編; 「其他」에는 가) 選舉細則(아래에서 다시 설명; 이 책에는 국문만 있으며 일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있어 이를 보충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영문도 있음.) 나) 軍政長官의 書翰(3편), 다) 기타 (8건)이 게재되어 있다.

(7) 法務局, 美軍政法令集(1982년 8월 10일, 법무부 도서실)

아마도 이 책은 현재까지 필자가 1년 이상 찾고 있는 한국에 보존되어 있는 미군정법령집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원본이 편집되어있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출판한 책이 아니라, 그 당시 공포된 미군정법령이나 포고문, 부령 등이 실린 미군정청 관보를 하나하나 수집해둔 원본으로, 이를 현재의 담당자가 날짜별로 정리하고, 누락된 부분의 목차도 손으로 직접 기입하여 둔 것으로, 그 가치가 크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날짜가 1982년 8월 10일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내용들은 대부분 국문, 영문 순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가끔씩 누락된 부분이 있다.

이를 복사하려고 해도 파손되기 쉬워서 복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목차만 복사를 하여 둘 수밖에 없었다.

그 목차(담당자가 손으로 기입하여 정리하여 둔 것)를 소개하면,

「太平洋美國陸軍總司令官布告」에는, 1945. 9. 7. 제1호에서 1946년 7. 1.의 제4호까지 실려있다.

「軍政法令目次」에는, 1945. 9. 24. 제1호부터 1948년 8. 12.의 219호(미군정청 관보)까지 실려 있다. 제109호, 제214는 원본이 없어 담당자가 손으로 직접 기

입하여 두었고, 물론 영문도 없다.

그러나 이 책에서 큰 수확은, 지금까지 기존에 없던 법령제212호-제219호까지의 영어원본이 관보에 공포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의 미군정법령집에서도, 민족문화사 영문판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으며,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原主文化社 出版의 美軍政廳官報에서도 겨우 제214호의 영문 원본만 있었으나, 여기서는 오히려 법령 제214호만 제외하고 영문 원본이 다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법령 제175호(國會議員選舉法(1948. 3. 17.))의 시행세칙인 「國會議員選舉細則」(국문, 영문(Election by Law))으로 1948년 3월22일자로 관보에 실려 있다. 이도 문서말미에 조선군정장관이란 공포기관도 없고 法令 戶數도 물론 없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의 미군정법령집에도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다.

1)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律」에는, 제1호(1947. 5. 6.)부터 1948년 5월 19일의 제12호까지 실려 있다.

2) 「立法決議案」에는, 獎忠壇公園一帶는 國立公園으로 定함이 可함 (1947. 4. 4. 第45次 會議內容), 歸還同胞日貨凍結解除에 關한 案, 在日同胞財產保護에 關한 案(1947. 4. 25. 第59次 會議 內容), 大學運營에 關한 案(1947. 3. 14. 第31次 會議 內容)이 순차적으로 실려 있다.

이도 위에서처럼 가결 전의 것으로, 그 가결된 내용은 「朝鮮過渡立法議院決議案」으로 1947년 6월 18일자로 공포된 것이다.

3)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一般告示」에는, 1945. 10. 5.의 제1호부터 同年 11. 31.의 제7호까지의 내용이 있다.

4)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一般命令」1945. 1. 6.의 士官·下士官 및 兵士는 조선내에서 재산화물 또는 商品取引禁止의 내용이 있으며,

5)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布告」에는, 1948. 4. 5. -1948. 5. 28. 5개의 布告와, 1946. 1. 19.의 하나의 포고가 있다.

목차상 이상의 내용이 전부이나, 이는 국문, 영문이 교대로 편집되어 있다.

(8) 여강출판사, 美軍政法令集(국문판)(영인본, 1983)

이 책은 바로 위 7번을 영인한 것으로 898페이지에 달하며, 현재 고려대학교·덕성여자대학에 소장 중이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저자가 남조선과도입법위원으로 1947년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898페이지에 1983년 단행본으로 한국어로 출판되며, 세종대에 소장 중이다. 아마도 위와 같은 책이지 않을까 한다.

(9) 法院行政處, 美軍政法令集(국문판, 1983)

이는 법원행정처가 출판사로 되어 있으며, 위의 2·5번의 법원행정처 출판본(1969년)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0) 民族文化,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法令集(國文版/英文版, 1986)

이 책의 해제는 1983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윤재수 교수님이 한 것으로, 그 내용은 태평양미육군총사령부가 포고한 포고문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이 그 관보에 게재 공포하였던 법령을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의 자료 출처는, 고 鄭光鉉 博士가 본인의 서재에 보관하고 있던 것과, 미군정법령집이라는 명칭 또는 군정청관보철로서 법제처, 내무부, 국회,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 등의 각 도서관과 도서실에 산재하여 있던 것을 정리하여 발간한 것이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그 포고문과 법령은 1945년 9월 7일부터 포고 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을 시작으로 1948년 8월 2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까지의 포고문 6건, 법령 219건, 행정명령 24건, 부령, 지령 등 115건, 南朝鮮過渡政府

法律 14건, 立法議院 立法決議案 4건, 기타 11건, 계 317건으로 법령으로 공포한 것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도, 미군정법령 제212호-제219호까지의 영문 법령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게재된 내용은 위의 6번 한국법제연구원(1971년)의 법령집과 거의 유사하다.³⁷⁾

(11) 나라문화사, 美軍政法令集(국문판, 1992)

이 책은 저자가 대한민국으로, 590페이지에 달하며, 21cm 크기의 단행본으로 현재 고려대(서창)에 소장 중이다. 가장 최근판인 것 같으며, 아마 위의 2)번·5)번판도 같은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원본 못 본 상태이다.

(12) 美軍政法令集; 현재 건국대(상허)에서 소장

이 미군정법령집은 원본을 수집해둔 것으로 태평양미국육군사령부 포고 제1호부터 1946년 5월 17일까지의 법령 등이 실려있다. 사이즈는 21cm 크기로 되어 있다.

(13) 대법원 소장 미군정법령집

군정법령집에 관한 5권의 책을 소장 중이다. 그 중 4권은 모두가 복사본이고, 1권만 위의 4번에 해당하는 1969년의 법원행정처 출판본이다.

그리고 4권의 복사본의 표지에는 각각, 「軍政法令集, 美軍政廳 各部令集,

37) 참고로, 미군정법령에 관한 상세한 논문으로는, 문광삼, 『미군정기 헌정사』; 한태연 외 공저, 『한국헌법사』(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330쪽 이하 참조. 문 교수님은 위의 민족문화 출판물을 참고로 사용하였다.

軍政廳任解 免職 辭令集, 軍政廳公告集』이라고 적혀있다.

먼저, 「軍政法令集」에는 등록일이 1995년 1월 20일로 되어 있고, 재조선미군 정청법령 제1호부터 제211호까지만 있으며, 법률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그리고 1948년 3월 8일자의 법령개정표(Status of Ordiance)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법령 내지 법률은 영문·일문·국문 등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전부가 3종류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비교적 1946년 2월-日人官吏가 돌아가는 시점-까지의 日文이 잘 갖추어져 있다.

두 번째, 「美軍政廳 各部令集」에는 포고를 비롯하여, 각부령 행정명령, 인사 행정규정, 각종의 규칙 등이 실려있다. 1948년 6월 28일까지의 내용이 영문·국문·일문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 있으나, 역시 세 종류가 모두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세 번째, 「軍政廳 任解免職 辭令集」에는, 任令解令, 免職辭令, 일반고시 등이 영문·국문 등이 배열되어 있으나, 역시 세 종류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네 번째, 「軍政廳公告集」에는, 조선군정청으로 되어 있으며, 1946년 2월 25일 公告(公示催告) 제1호부터, 1948년 5월 15일 公告 제76호까지 실려 있다. 전부가 국문으로만 실려 있다. 물론 관보 표시가 되어 있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복사본들은 이 책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출처를 밝혀두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의 것을 원본으로 사용하여 정리를 해 둔 것으로 추측된다.

V. 美軍政廳官報와 관련하여

미군정청 관보에 관하여는 앞에서 발행방법, 발행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미군이 1945년 9월 7일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국내에서 1945년 9월24일부터 대한민국

정부수립때까지 官報(Official Gazette)를 부정기적으로 발간하였다.

그 당시 관보는 영어를 공용으로 하였으나, 영문, 일문, 한글판을 동시에 공포하되 오해가 있을 때는 영어를 위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日人官吏와 新日朝鮮人을 軍政廳의 官吏要員으로 기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통역정치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兩局長制度를 실시하여 韓人參與를 늘리고, 1946년 2월 이후의 관보에는 日文은 보이지 않으며, 1946년 3월 29일에는 法令 第64号로써 局을 部로 개편하면서 군정청의 부서는 거의 확정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46년 9월 11일 미군정청이 부처장회의에서 러치(Archer L. Lerch; 미육군성소장; 조선군정장관)가 군정하의 행정권을 조선인에게 이양하고, 미국인 顧問은 부결권만 행사하고 한미양국어로 사용하던 문서는 한국어로만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청관보와 법령은 여전히 영어와 한국어로 계속 발간되었다.³⁸⁾

(1) 『駐韓美軍政廳官報』(在朝韓美陸軍司令部軍政廳, 1945)(국회도서관에 소장)

아마 이 자료가 원본으로 「在朝韓美陸軍司令部軍政廳 編, 駐韓美軍政廳官報」(청구기호: 354.51.스138스)³⁹⁾로 되어 있으며, 국회도서관 귀중본문고에 1966년 9월 21일자로 등록되어 보관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국내에서는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는 것과 양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하나 그나마 원본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된다(C1에 해당함). 아직 C2, C3은 못 본 상태이다.

편집되어 있는 내용의 기간은 대개 1945년 9월 7일/29일~1946년 12월 31일

38) 그리고 참고로 미군정관보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崔貞泰, 上揭書, 113~148쪽 참조.

39) 그리고 이는 3종류가 있는데, 복사했다는 의미의 C1, C2, C3로 분류되어 있고, 그 종류가 다르다. 이에 관한 자료 도움은 국회사무처의 국회기록보존소 사료관 김현우 박사님의 도움이 컸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사이의 것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순서는 英文, 國文, 日文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나, 전부 세 종류가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목차도 없으며, 배열 순서도 년대별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단지 있는 자료만을 모아둔 상태이다.

(2) 李吉相 編(韓國精神文化研究院), 『美軍政廳官報』(Official Gazette ;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V. No.1(1945. 9.~1946. 9.), V. No.2 (1945. 9.~1946. 9.), V. No.3(1947. 10.~1948. 9.), V. No.4(1947. 10.~1948. 8.)(原主文化社, 1991年); 이 중에서 누락된 부분은 1권 서문에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 관하여 몇 가지 언급하여 둘 것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미국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Official Gazette Vol. 1-4」를 기초로 한 것이다.

2) No. 1에 이 책의 목차에는 없으나, p.37~91에 「서울시헌장」(Charter of the City of Seoul)(1946년 8월 10일 자, Arecher L. Lerch,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in Korea ;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이 영문으로만 실려 있다. 즉 일본판이나, 한글판이 없다.

또한 이 「서울시헌장」은, 韓國法制研究會, 『美軍政法令總攬』(영문판)(1971年)의 제8장, p.1008 이하에도 영문으로만 실려 있다.

3) 1946년 2월 19일 이후부터는 日文이 안 나타나는데, 이는 그 때부터 일본 관계자들을 귀국초치하였기 때문이다.(미군정청관보 V. No. 2, p. 433부터, 즉 법령 72호부터)

4) 「원주문화사」 출판의 이 관보는 韓國法制研究會, 『美軍政法令總攬』(1971年)보다 20년이나 나중의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록물임에도 오히려 훨씬 내용이 빈약해 보이나, 원본을 분석한 것과 되도록 많은 양의 모든 법령

종류 등이 편집되어 있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 「원주문화사」출판의 이 관보에는, 이 관보 發刊 이전의 태평양미육군총사령관 포고, 군정법령, 남조선과도정부법률, 행정명령, 各部令, 인사행정통보, 임명, 해임, 인사발령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6) 이 책에서는 미군정 3년간에 간행된 「官報」의 내용을, 포고문, 군정청법령, 각부령, 인사행정명령, 지침, 임명·해임 등으로 배열하였다.

위의 관보에서도 누락된 부분을 발간하고자 하는 법령집에는 보충이 되어 있다.

VI. 본 美軍政法令集의 內容과 特徵

이상과 같이 현재까지 국내에 원본의 편집 또는 간행된 미군정법령집 등의 계보를 조사해두고, 상호 빠진 원문들을 정리하여 묶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찾는 수고를 덜고자 하였다.

첫째, 이번에 발간 예정인 법령집은 기존에 있던 형태와는 달리, 시기적으로 美軍政法令(제1호부터 제140호까지)과 南朝鮮過渡政府법령(제141호부터 제219호까지)로 구분하여, 그 시기에 포함되는 法令 이외에 기타 法律, 部令, 處令, 一般告示 등을 戶數順, 年度順, 날짜순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또한 그동안 발굴해 낸 중요한 자료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 것으로는 관오 표시가 되어 있는 법령 제212호부터 219호, 조선과도입법의원원법(영문만), 조선국방경비법·조선해안경비법(국문, 영문 1946. 6. 15.), 조선해안경비법(1948. 8. 4. 영문) 기타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누락되어 있는 형태도 다양하여 법령은 있으되 한·두 줄이 누락된 조문, 아니면 한 호 전체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여러 호가 동시에 빠진 부분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

려고 하였다.

또한 英文·日文·한글이 동시에 갖추어진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므로 그것도 역시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수집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되도록 사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원본에 가까운 것을 자료로 채택하였다.

넷째, 그 당시 공포된 모든 법령 등에서 인사행정명령이나, 임명·해임 등에 관한 것은 편집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선택적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작업들을 통하여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자, 그리고 법조계, 기타 관계자들이 하여 왔던 수많은 수고를 들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가서 찾을 수 있는 안내역을 하고, 역사를 정리하는 자세로 역사적 자료를 재정립해보는 것으로 본 법령집을 편찬하는 목적이 달성되기를 희망해본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여전히 메워가야 할 것이다.⁴⁰⁾

40) 이에 조금 더 보충되는 글은 앞으로 발간될 「미군정명령집」의 해제로 실을 예정이니 이후에는 그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A Study on Orders under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hoi, Kyeong-Ok*

The existence of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functions as a considerably noteworthy role in establishing Korean Government in near future; All statues announced by the Army Military Government, such as Proclamation, Ordinance, Department Orders, Bureau Orders, Bar Admission, Executive Orders, Instructions, General Notice, Public Notice, Regulations and so forth, have a considerably importance significance in Korea. Concerning what roles these statues played in (South)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ree-year military government, I intend to keep the important parts in good order systematically in this theme.

In particular, this theme is to cover newly-unearthed materials that are still controversial :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nd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Statute No. 86 on June 15, 194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GKC · AGKCG 1946).

What to be covered in this theme is as follows :

I. Introduction

II. The Basis & Class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Statutes

* Doctor of Law, Chief Researcher(The Law Research Institute S.N.U.).

- III. The Analysis of the Existing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Statute Book.
- IV. In Reference to the Official Gazette from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fice.
- V. About the time when AGKC and AGKCG (Statute No. 86 dated on June 15, 1946) are discovered (RG407, 554)
- VI. The Contents and Features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Statute Book.

[**Key Words**] Key Word: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he Kinds of Statutes,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Korean Constabulary (AGKC), The Articles for the Gover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AGKCG), The Official Gazett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fice